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이명수·박덕흠·성일종

강대식 • 박성중 • 김성원

홍문표 · 김태흠 · 추경호

최형두 • 권명호 • 윤창현

하영제 · 서범수 · 임이자

김희국 · 김영식 · 김석기

김형동 · 강기윤 · 김희곤

이만희 • 이채익 • 신원식

서정숙 · 허은아 · 정점식

金炳旭・김예지・유경준

양금희 · 조경태 · 김승수

엄태영 · 홍석준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 보육정

보시스템 역시 법적 근거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추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규정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 다.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1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 6.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 7.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된 정보에 한정한다) 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 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임) ① ~ ③ (생 략)	제4조(책임) ① ~ ③ (현행과 같	
	승)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	4	
육교직원의 <u>양성 및 근로여건</u>	<u>양성,</u> 근로여건	
<u>개선</u>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u>개선 및 권익 보호</u>	
다.	<u>.</u>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		
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u>하여야</u> 한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u>공표하여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	
	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	
	<u>합정보시스템을</u> 구축·운영할	
	<u>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 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등에 관한 자료
-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자료
-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 용대상에 관한 자료
-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에 관한 자료
- 6.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 ~ ③ (생 략)
 -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5. (생 략) <신 설>

- 7. 그 밖에 보육사업 실시에 필 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 련된 정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 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 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 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6. ~ 9. (생략)

⑤ • ⑥ (생 략)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 5. (생략)

②·③ (생 략)

에	관한	사항
---	----	----

- 6. ~ 9. (현행과 같음)
- ⑤·⑥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